공개용

본 자료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6-2호)

2026. 8. 20.

무 역 위 원 회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시장점유율 등의 자료는 수치를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 또는 변동폭(%p) 등을 표기함

공개용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6-19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6-2호

조 사 건 명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신 청 인 주식회사 영진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38
대표자 박 제 성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담당변호사 김태우)
더인터내셔날트레이드컨설팅(공인회계사 김종탁)

피 신 청 인 1) <중국>
1.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2.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
3. 유니라이온(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대만>
4.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

조사대상물품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caustic soda) solid)
HSK 코드 : 2815.11.0000

의 결 일 2026.8.20.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등 관련 규정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각 피신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공개용

주 문

1.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다.

2.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7.1조와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 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중국)

-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6%
 - 빈화그룹(Befar Group Co., Ltd.)
 - 하이웨(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2.21%
- 유니라이온(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9.93%
- 그 밖의 공급자 : 17.58%

(대만)

-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89%
- 그 밖의 공급자 : 38.89%

이 유

주식회사 영진[2](이하 “신청인”)이 2026.3.17.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건(조사개시 : 2026.4.7.)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이하 “예비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예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의한 본조사를 개시하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다.

2) 이하 본 의결서에서 회사명은 “영진” 등과 같이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하여 기재함

Ⅰ. 배경

신청인은 2026.3.17.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조사실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여 동 사항을 2026.4.7. 관보에 게재하였다.

국내생산자는 영진 1개사이며,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공급자별 수입물량 비율을 고려하여 중국의 동루이, 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 대만의 포모사 총 4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고, 해외공급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 국내 수입자와 수요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대상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1. 조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조사대상물품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4.7. 관보에 게재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3]와 본 건 예비조사보고서[4]에 의하면, 조사대상물품의 품명은 고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caustic soda) solid)이고, 관세품목분류(HSK)는 2815.11.0000이며, 조사범위는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이다.

2. 국내 동종물품

WTO 반덤핑협정 제2.6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동종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7호

4) 예비조사보고서 p.3.

예비조사보고서[5]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구성요소,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측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검토하였다.

수입자인 새한실리켐은, 조사대상공급자는 99% 순도 및 펄·펠릿 등 다양한 제형 또한 생산 가능하나, 국내생산자는 98% 순도 및 플레이크 형태의 제품만 생산 가능하고, 순도 차이로 인해 반도체 공정 등 특정 용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고체 상태로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용해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농도로 조절하여 사용하므로 1% 내외의 순도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펠릿의 경우 국내 수요량이 매우 적고, 펄 타입에 대한 수요는 일부 수요자가 작업 편의성 등 기호에 따라 선호함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 제품(플레이크 타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성격의 수요라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순도 및 형태 차이에 따라 특정 용도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수입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함께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 예비조사보고서 pp.5-8.

또한 생산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만산 제품의 공급이 일시 중단된 시기 일부 유통 업체들에 대한 매출 물량이 급증하여 대체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추후 현지실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정밀화학 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후 현지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품이 조사대상물품과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제조공정, 유통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종물품이며, 상업적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Ⅲ. 국내산업의 범위 및 비밀취급

1.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WTO 반덤핑협정 제4.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동안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조사실은 2026.3.17. 접수된 조사신청서를 검토한바,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50%를 초과하고, 2024년 국내 총생산량의 100%로서 최소기준인 25% 이상이므로 조사신청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2026.4.13. 국내생산자인 영진, 범창산업 총 2개사에 국내산업 피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영진은 2026.5.14.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범창산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이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답변서 등을 확인한 결과, 영진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 6개월 동안(2025.9.17.~2026.3.16.) 중국산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

대상물품의 공급자 및 수입자와 특수관계도 없었다.

영진은 이용 가능한 국내산업피해 지표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였고, 2024년 기준 동 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이 국내 동종물품 총생산량의 xxx%로 상당 부분을 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영진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2. 비밀취급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보고서[6]에 의하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공급자는 조사신청서,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대해 합리적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상세한 공개본을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공급자가 비밀취급요청 자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비밀이 아닌 공개본을 제출한 점, 비밀취급요청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 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공급자가 비밀취급 요청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고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

6) 예비조사보고서 pp.16~19.

Ⅳ. 덤핑사실

위원회는 덤핑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의 선정 및 조사 경과 등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공급자별로 덤핑사실 여부를 검토하였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공급자 선정

예비조사보고서[7]에 의하면,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공급자별 수입물량을 고려하여 중국의 '동루이', '스카이 임펙스', '유니라이온', 대만의 '포모사' 총 4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4개사 중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만이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외 3개사는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뿐 아니라 그 밖의 공급자도 덤핑사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참여 방법을 안내[8]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 중 어느 기업도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7) 예비조사보고서 p.20.

8) 전자관보 및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대상 서한 발송 등

2. 덤핑사실 조사경과

예비조사보고서[9]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6.4.7. 덤핑사실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2026.5.18.까지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부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의 동루이 및 그 관계사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해옴에 따라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2026.5.26.로 연장하였으며, 이후 동루이 및 그 관계사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2026.4.7.부터 2026.5.6.까지 본 건 관련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를 포함한 어느 이해관계인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실은 2026.6.17. 동루이 및 그 관계사에게 제1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동 공급자는 한 차례의 답변기한 연장을 거쳐 각 항목별로 연장된 기한 내에 제1차 보충 답변서를 제출(16개 항목 2026.6.26., 잔여 13개 항목 2026.6.30.)하였다.

조사실은 2026.7.2. 동루이 및 그 관계사에게 제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공급자는 정해진 기한 이내인 2026.7.7. 제2차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별 예비덤핑률 산정 내역을 조사대상공급자, 공급국 정부 및 관세영역 당국,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의견수렴 기간: 2026.7.29.~2026.8.5.)하였으나, 어느 이해관계인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9) 예비조사보고서 pp.21~22.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관세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중 국 >

가.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10]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중국 산둥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자 겸 판매자 xxx개사, 전문상사 xxx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조사대상기간 총매출에서 조사대상물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xxx%로, 이 중 내수판매와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xxx%, xxx%에 해당하였다.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능력은 건조중량 기준 연간 xxx톤 수준이나, 조사대상기간 실제 생산량은 설비능력을 초과하여 연평균 가동률이 xxx%에 달하였다.

조사실은 피신청인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xxx[11]가 xxx와 xxx의 지분을 각각 5% 이상 보유[12]하고 있고, 각 사는 조사대상물품 생산·판매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건 조사에서 이들 3개사를 단일경제실체로 판단하였다.

10) 예비조사보고서 pp.27~30.

11)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12)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한편, 피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의 주요 원가 구성요소 중 일부를 총 xxx개의 관계사로부터 조달하였는데, 조사실은 이들 관계사 또한 xxx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xxx 임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직을 겸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13]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경영통계자료, 내수판매 및 대한국 수출자료, 조정요소, 제조원가 및 판관비[14], 조사대상물품 설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보충질의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모든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답변 중 일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하거나 증빙과 서술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보고 자체를 누락하여 덤핑률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가 완전한 형태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먼저,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원가 투입요소가 있는 경우 구매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공급 관계사의 생산원가[15]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요 투입요소 공급 관계사 중 3개사에 대하여 생산원가를 과소 보고하거나 이들과의 특수관계 자체를 부정[16]하여 구매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어렵게 하였다.

13) 예비조사보고서 pp.31~34.

1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통칭함

15) 생산원가(COP, Cost of Production): 제조원가(또는 매입원가)에 판관비를 합산한 가격

16) 3개사 중 1개사(xxx xxx xxx xxx xxx)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의 핵심요소인 제조원가 보고를 누락하였고, 다른 2개사(① xxx xxx xxx xxx xxx, ② xxx xxx xxx xxx xxx)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자와의 특수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생산원가 자료 일체를 미제출함

다음으로,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제조원가 집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그 원재료의 제조원가 관련 자료 일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물품의 원재료인 xxx xxx의 제조원가가 이를 추가로 농축·가공하여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원가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피신청인이 유지해 온 원가 집계방식이 조사대상물품의 생산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17]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제조원가가 그 xxx xxx xxx의 제조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고, xxx xxx 원가 또한 피신청인의 관계사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는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Ⅱ에 따라 제조원가 구성항목 중 원재료(액체 수산화나트륨) 투입액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자료[18]를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제조원가를 조정하였다.

한편, WTO 반덤핑협정은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사실은 상기 자료 외에도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다른 이해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실이 사용한 자료[19]가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대체정보로 사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17) 예비조사보고서 pp.35~36.

18) 중국의 대표적인 화학분야 가격정보 제공기관인 OilChem이 발표한 농도 xxx%의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평균가격으로, 수분포함중량 기준 톤당 xxxRMB

19) OilChem이 xxx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건조중량과 수분포함중량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권역별·일자별로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해당 자료는 피신청인이 사용한 원재료와 농도(xxx%)가 동일하여 별도 환산이 불요하고, 공장도 가격으로서 운송비 차감 등의 조정 또한 불요하며, 증치세를 차감하여 피신청인의 원가자료와 세금처리기준을 일치시킨 자료임

예비조사보고서[20]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에게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21]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 여부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관계사인 xxx에 자가소비 용도로 판매한 조사대상물품 판매단가가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단가의 ±2%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이를 정상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거래 건별로 공장도 가격과 해당 CCN의 운임 차감 생산원가[22]를 비교하고 이를 CCN별로 종합하여 원가미만 판매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내수판매자료 일체를, 원가미만 판매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내수판매자료만을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하였다.

이어서 조사실은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통과한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자료가 물량 면에서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자료는 전체물량과 개별모델 측면에서 모두 정상가격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23]하다고 판단하였다.

20) 예비조사보고서 p.36.

21) 예비조사보고서 pp.36~40.

22) CCN별 생산원가 중 '제조원가'의 경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OilChem 자료를 사용하여 원재료비를 조정한 금액을, '판관비'의 경우 피신청인의 판매비용 원장을 기준으로 누락된 내수판매비를 추가 반영하고 조사대상물품 판매와는 무관한 영업외 수익 및 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사용함

조사실은 피신청인의 내수판매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내륙운임과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공제하되, 신용비용의 경우 피신청인의 실제 대금회수 증빙을 토대로 신용기간을 재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관계사인 xxx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운송 중개 수수료의 경우 계약서와 지급 증빙이 모두 불분명하여 조정요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조사보고서[24]에 의하면,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한국의 거래처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한국 수출 시 발생한 비용으로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및 보험료, 은행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용 및 증치세 미환급액을 덤핑가격 조정요소로 반영하였으며, 과세가격으로는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66%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23)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을 통과한 내수판매물량이 대한국 수출물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물량 면에서 정상가격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의 경우 통상거래가격 검증을 통과한 내수판매물량이 전체물량 및 개별모델 측면에서 모두 대한국 수출물량의 xxx배(xxx%)를 초과하였음

24) 예비조사보고서 pp.40~41.

나.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25]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대한국 수출물량이 상당하여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는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도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 제7조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조사에 필요한 답변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중국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신청인의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25) 예비조사보고서 pp.42~44.

구체적으로 정상가격의 경우 피신청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공급국 내수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는바, OilChem이 공표한 액체 수산화나트륨 내수 출하가격 평균액에 신청인의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양국 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노무비와 제조경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판관비(운임 제외) 및 이윤에 조사에 협조한 xxx[26]의 판관비 및 이윤을 각각 가산하여 순(純)구성가격[27]을 산정·적용하였다.

덤핑가격과 과세가격의 경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하였으며, 덤핑가격 조정요소로는 본 건 조사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피신청인 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2.21%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26) 본 건 조사에 유일하게 협조한 조사대상물품 내수·수출판매 전문 무역상으로, 무역상인 피신청인이 취급한 상품에 대한 공급국 내수판매에서의 비용 및 이윤을 산정하기 위하여 xxx의 자료를 이용함

27) 운임 등의 판매비가 포함되지 않은, 공장도 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조정요소 공제는 불요함

다.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28]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무역상인 수출자로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대한국 수출물량이 상당하여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피신청인과 동일한 유통구조를 지닌 스카이 임펙스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중국 시장조사기관 자료, 신청인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순구성가격과 덤핑가격,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을 19.93%로 산정[29]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라. 그 밖의 공급자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공급자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예비조사보고서 pp.45~46.

29) 정상가격으로 적용한 순구성가격은 중국 스카이 임펙스의 산정방식 및 금액과 전부 일치하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각 사 물품의 수입단가 차이로 인하여 예비덤핑률 차이가 발생함

예비조사보고서[30]에 의하면, 조사실은 중국의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존재하지 않는바, 다른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신청인 자료, 조사에 협조한 공급자의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별도로 산정하였다.

먼저 정상가격으로는 OilChem이 발표한 원재료 가격에 신청인의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양국 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노무비와 제조경비, 중국 내 알려진 생산자 3개사의 운임을 제외한 판관비 평균액,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도 중국 화학제조업 평균 이윤을 가산하여 순구성가격[31]을 산정·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실은 조사대상공급자를 제외하고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생산자인 수출자 총 xxx개사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단가(CIF 가격)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고, 덤핑가격 조정요소로는 본 건 조사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동루이 및 그 관계사의 자료 중 그 밖의 공급자 수출상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수출단가 대비 조정요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별도로 산출하였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17.58%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중국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결정한다.

30) 예비조사보고서 pp.47~49.

31)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는 약 xxx개사로 생산자인 수출자와 전문무역상이 혼재되어 있는바, 거래단계 차이로 인한 판매가격 및 비용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실은 이 중 생산자로 확인된 수출자(xxx개사)의 수입단가를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상가격 또한 공급국 내 생산자의 비용과 이윤 정보만을 토대로 순구성가격을 산정·적용함

< 대 만 >

가.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이하 "피신청인")

예비조사보고서[32]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대한국 수출물량이 상당하여 본 건 개시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참여 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는 피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도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Ⅱ 제7조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실은 피신청인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송부하면서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통지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조사에 필요한 답변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실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의 자료, 피신청인의 재무제표, 신청인의 제조원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을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32) 예비조사보고서 pp.50~52.

구체적으로 정상가격의 경우 글로벌 화학 정보제공기관인 Chemical Market Analytics가 공표한 액체 수산화나트륨 대만 내수가격 평균액에 신청인의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한국과 대만 간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한 노무비와 제조경비, 상장기업인 피신청인이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정한 판관비, 피신청인과 대만 내 다른 종합화학회사인 xxx[33]의 공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양 사의 가중평균 이윤[34]을 가산하여 구성가격을 산정·적용하였다.[35]

덤핑가격과 과세가격의 경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서 확인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피신청인 물품 수입단가(CIF 가격)를 적용하였으며, 덤핑가격 조정요소로는 본 건 신청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대만~한국 간 해상운송 및 수출부대비용 견적서를 토대로 관련 비용을 산정·공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실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덤핑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38.89%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7조, WTO 반덤핑협정 제2.2조, 제2.4조, 제6.8조 및 동 협정 부속서 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33) 대만의 대표적인 석유화학·플라스틱 원료 제조기업으로, 성격상 석유화학제품 생산비중이 높으나, 반도체용 세정제 및 도금액 등 무기화학제품(과산화수소, 황산 등)도 생산함

34)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자를 기록한 관계로 내수판매물품이 원가 이상에 판매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거래에서의 이윤율을 산출하기 어려워,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2.2.2조(iii)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과 동일 부류의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xxx의 이윤 자료를 사용함

35) 내수판매 시 내륙운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B to B 거래품목 특성상 대만 내 운임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워 이를 정상가격 조정요소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덤핑가격 조정요소에도 반영하지 아니함

나. 그 밖의 공급자

WTO 반덤핑협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 산정 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 공급자의 덤핑률은 가중평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조사보고서[36]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대만의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인 포모사가 조사에 대응하지 아니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관계로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코트라(KOTRA)의 대만 내수시장 조사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을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 산정에 필요한 핵심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실은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조사대상기간 대만산 수입물량의 xxx%를 차지하는 포모사의 예비덤핑률인 38.89%를 그 밖의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가중평균 대상 덤핑률이 없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만의 유일한 조사대상공급자이자 대한국 수출물량 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포모사의 예비덤핑률을 그 밖의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다.

36) 예비조사보고서 p.53.

4. 덤핑사실 예비조사 결과 종합

예비조사보고서[37]에 의하면, 조사실의 덤핑사실 예비조사 결과, 중국 및 대만의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은 3.66% 내지 38.89% 범위에서,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중국 17.58%, 대만 38.89%로 각각 산정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예비덤핑률 산정이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예비덤핑률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최소허용 수준인 2%를 상회하므로 공급자별로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7) 예비조사보고서 pp.54~55.

Ⅴ. 국내산업의 피해

WTO 반덤핑협정 제3.1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3.2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덤핑물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덤핑물품이 동종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었는지, 또는 상당한 정도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가격상승을 억제하였는지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반덤핑협정 제3.4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 효과와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량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 효과 포함), 이윤,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

예비조사보고서[38]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2022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32.2% 증가, 2024년 xxx톤으로 21.9%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xxx톤으로 12.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3% 증가하였는바,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3.6%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연평균 13.9% 감소하였으나,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연평균 12.3% 증가하였다.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6.7%p 상승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하였다.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38) 예비조사보고서 p.58~59.

2.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 덤핑물품과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예비조사보고서[39]에 의하면,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2년 xxx천원에서 2023년 xxx천원, 20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1% 하락하였다. 한편,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2년 xxx천원에서 20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한 후, 20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3% 상승하였다.

나. 덤핑물품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 대비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 수준으로 전체 조사대상기간 중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2024년의 경우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 수준으로 저가 판매되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는 연평균 6.6% 상승하였으나, 덤핑물품의 경우 판매가격이 연평균 3.1% 하락하였으며,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연평균 4.3% 상승에 그쳐 제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39) 예비조사보고서 pp.60~62.

이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 대비 실제판매가격 비율은 2022년 xxx%에서 2025년 xxx%로 8.6%p 하락한바, 덤핑물품의 지속적인 저가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울 목표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였다.

3.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생산량 및 가동률

예비조사보고서[40]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고,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xxx톤, 20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 가동률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7.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판매 및 재고

예비조사보고서[41]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22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 2024년 xxx톤, 20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 기말재고는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xxx톤, 2025년 xxx톤으로 연평균 9.4%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 물량 대비 기말재고 비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0.6%p 상승한

40) 예비조사보고서 p.63.
41) 예비조사보고서 p.64.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시장점유율

예비조사보고서[42]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하였다.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6.7%p 상승하였고, 기타국산 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추세가 상반된 변동을 보이고, 동종물품의 점유율 하락분(-20.1%p)의 상당분이 덤핑물품의 점유율 상승(16.7%p)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42) 예비조사보고서 p.65.

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덤핑마진의 크기

예비조사보고서[43]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22년 xxx천원에서 20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20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6% 상승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중 재료비가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하여 국내 동종물품 가격에 재료비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이며, 재료비는 2022년 xxx천원에서 2023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24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였고, 20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2% 상승하였다.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상승추세를 보이며 5.5%p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단위당 제조원가는 연평균 6.6% 상승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이 연평균 4.3% 상승에 그친 것은 국내생산자가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연평균 ﹣3.1%)와 시장점유율 상승(16.7%p)으로 인해 내수판매량(연평균 ﹣13.9%) 및 시장점유율(-20.1%p)이 감소·하락하는 상황에서 제조원가 상승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책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예비조사보고서[44]에 따르면, 조사실이 산정한 예비덤핑률은 3.66~38.89%로

43) 예비조사보고서 pp.66~67.
44) 예비조사보고서 p.67.

덤핑마진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고, 덤핑물품의 수입물량과 가격을 감안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이윤

예비조사보고서[45]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내수 매출액은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2% 감소하였다.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22년 xxx백만원에서 2023년 xxx백만원으로 59.4% 감소하였다가 2024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2년 xxx%에서 2023년 xxx%로 하락하였고, 2024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 -xxx%로 음수전환하였다.

바. 투자수익률

예비조사보고서[46]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투자자산총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계산된 투자수익률은 2022년 xxx%에서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부(-)의 투자수익률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5) 예비조사보고서 p.67.
46) 예비조사보고서 p.68.

사. 현금흐름

예비조사보고서[47]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순유입되었으나, 2025년에는 xxx백만원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고용 및 임금

예비조사보고서[48]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생산직 및 사무직 고용인원은 2022년 xxx명, 2023년 xxx명, 2024년 xxx명, 2025년 xxx명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인당 평균임금은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생산성

예비조사보고서[49]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1인당 생산량은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 2024년 xxx톤, 20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매출액은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47) 예비조사보고서 p.68.
48) 예비조사보고서 p.69.
49) 예비조사보고서 p.69.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부가가치는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성장성

예비조사보고서[50]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은 2022년 xxx백만원에서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점유율은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지속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2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동률은 2022년 xxx%에서 2023년 xxx%로 하락하였다가, 2024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5년 xxx%로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17.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 자본조달능력

예비조사보고서[51]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적자전환되어 자본조달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 예비조사보고서 p.70.
51) 예비조사보고서 p.71.

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예비조사보고서[52]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연평균 92.2%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 2024년 xxx백만원, 2025년 xxx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 종합 검토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령 등에 근거하여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와 통계 등 이용가능한 자료 및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산업피해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였다.

조사실의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도 상승한 반면,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의 판매량은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하락한바, 덤핑물품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높고,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내수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산업의

52) 예비조사보고서 p.71.

영업이익 하락 및 적자전환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가동률, 내수판매량 등이 감소·하락하였고, 내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하면서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1인당 부가가치 등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 주요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실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Ⅵ.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덤핑수입품이 동 협정 제3.2조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간의 인과관계 입증은 조사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덤핑물품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 및 가격에 미친 영향,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의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미친 영향 등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와 덤핑물품 수입 이외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예비조사보고서[53]에 의하면 조사실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관련 증거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였다.

53) 예비조사보고서 pp.73~75.

첫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고(연평균 12.3%) 국내 시장 점유율도 xxx%에서 xxx%로 크게 증가하였으며(16.7%p), 이에 따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점유율은 xxx%에서 xxx%로 하락하였다.

둘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 저가에 판매되었고 가격비율은 2022년 xxx%에서 2025년 xxx%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상승 억제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저가 판매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 생산량, 가동률, 내수판매량 등이 감소·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 감소, 투자수익률 및 자본조달능력 악화, 1인당 부가가치 감소 등 국내산업 피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위원회는 이상의 조사실 검토를 종합하여 국내산업이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2. 덤핑물품 이외 요인의 영향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예비조사보고서[54]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이외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2022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 2024년 xxx톤, 2025년 xxx톤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2.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2022년 xxx%, 2023년 xxx%, 2024년 xxx%, 2025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판매가격이 덤핑물품의 xxx~xxx배 수준으로 훨씬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54) 예비조사보고서 p.77.

나. 국내소비 변화

예비조사보고서[55]에 의하면 국내소비 규모는 2023년 4.7% 감소하였다가, 2024년 9.6% 증가, 2025년 14.3%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6% 감소하였다.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23년 20.3% 감소, 2024년 0.9% 증가, 2025년 20.6%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9% 감소하였다.

반면,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2023년 32.2% 증가, 2024년 21.9% 증가, 2025년 12.0%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국내소비 감소 폭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점, 덤핑물품의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소비 감소보다 덤핑물품의 저가판매가 국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수출 실적

예비조사보고서[56]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2022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82.2% 감소하였다가, 2024년 xxx톤으로 300.0% 증가하였고, 2025년 xxx톤으로 240.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수출량(연평균 34.3%) 및 수출비중(0.8%p)은 증가하였으나,

55) 예비조사보고서 p.78.
56) 예비조사보고서 p.79.

절대적인 수출물량이 매우 작고 국내산업 가동률이 xxx~xxx% 수준으로 충분한 추가 생산여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수출 증가가 내수판매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량 및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출물량이 매우 작고 추가생산여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동종물품 수출이 내수부문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라.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예비조사보고서[57]에 따르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 가격으로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검토하였다.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톤당 가격은 2022년 xxx천원에서 2025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상승하였다.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액체 수산화나트륨 가격이 연평균 4.7% 상승함에 따라 재료비가 연평균 5.2% 상승하였음에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연평균 4.3% 상승에 그치고, 특히 2025년의 경우 재료비가 10.6% 상승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5.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보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 악화는 재료비 인상 자체로 인한 것보다는 덤핑물품의 저가 판매와 시장점유율 확대로 인해 국내생산자가 재료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하였다.

57) 예비조사보고서 p.80.

이에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기타 요인

수입자인 새한실리켐은 신청인의 수익 악화가 원재료인 액체 수산화나트륨의 과도한 운반 비용, 설비 노후 등에 따른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원재료 운반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에서 영진 부천공장까지 육로로 운송됨을 전제한 것이나, 실제로는 여수공장에서 5,000~10,000톤급 선박으로 인천 탱크터미널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저장한 후, 신청인의 자체 탱크로리[58]로 인천 - 부천 간 단거리 운송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비 노후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신청인의 제조 설비는 자체 제작 설비로서 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므로 설비에 기인한 경쟁력 저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조사실은 신청인의 원재료 운반 비용이 과도하고 설비가 노후화되었다는 수입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본조사 과정에서 구체적·객관적 근거와 함께 관련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8) 액체 및 기체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탱크를 갖춘 화물 자동차를 의미함

바. 무역 제한적 관행 등

예비조사보고서[59]에 따르면,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 검토 요소로 열거된 외국 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등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이 주장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조사실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는 등 수입물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가격 측면에서도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2023년부터는 국내 동종물품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은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판매량은 지속 감소하였고, 가동률 및 국내시장 점유율 또한 하락하였으며, 특히 국내산업의 주요지표인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적자전환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하였다.

59) 예비조사보고서 p.83.

한편, 조사실은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 및 판매가격을 검토한바 국내 동종물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내소비 감소폭보다 국내 동종물품 판매량의 감소폭은 더 컸으며, 국내산업의 수출,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의 검토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같은 시점에서 덤핑물품의 수입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Ⅶ. 이해관계인 기타 의견 검토

1.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예비조사보고서[60]에 의하면, 수입자인 새한실리켐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사례와 같이 액체 수산화나트륨 제조 대기업에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생산자가 보다 다양한 제형을 생산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국내 대기업이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생산하지 않는 것은 과거 동 품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던 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현재는 시장 규모가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정당화할 수준이 되지 못하여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펄·펠릿 타입의 경우 완제품 형태 변경 설비를 추가하면 신청인 또한 충분히 제조 가능하나, 펠릿의 경우 국내 수요량이 매우 적고, 펄의 경우 국내 수요가 일부 존재하나[61] 수입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어 추가 설비투자 비용 대비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형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신청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저가 덤핑수입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60) 예비조사보고서 p.84.

61)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가 작업 편의성 등 기호에 따라 펄 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펄 타입에 대한 국내 수요는 신청인 제품(플레이크 타입)으로 대체 가능한 성격의 수요이며 절대적 수요로는 보기 어려움

조사실은 반덤핑조치는 관세법 및 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이며,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에서는 외국 수출자의 덤핑행위,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이들 간 인과관계가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Ⅷ. 잠정조치 건의

예비조사보고서[62]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국내소비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했고, 국내 동종물품보다 저가에 판매되어 동종물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투자수익률 등 국내산업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 중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관세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제9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신청인별 예비덤핑률(3.66~38.89%)에 해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62) 예비조사보고서 pp.85~87.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6년 08월 20일

위원장	이재형	이재형
상임위원	서가람	서가람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윤경애
위원	고준호	
위원	현혜정	
위원	권병규	
위원	김석배	
위원	박지형	박지형

적 용 법 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제8호 및 제32조
-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3조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내지 제66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7조
- WTO 반덤핑협정 제1조 내지 제7조 등

붙 임 자 료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별지] 피신청인의 주소

1. 동루이 및 그 관계사

(1) 동루이(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 No. 858, Huanghe Fifth Road, Bincheng District, Binzhou City, Shandong, China

(2) 빈화그룹(Befar Group Co., Ltd.)

: No. 888, Huanghe Fifth Road, Bincheng District, Binzhou City, Shandong, China

(3) 하이웨(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 Room 102, 1/F., East Office Building, No. 45 Pengwan Road, Qianwan Bonded Port Area, Qingdao Zone, China (Shandong) Pilot Free Trade Zone, 2025-0227 (A), China

2. 스카이 임펙스(Skyey Impex Limited)

: Room 1508, 15/F., Office Tower Two, Grand Plaza, 625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3. 유니라이온(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 Room 906-907, Block B, International Trade Center, N. 39, Nanjing Road, Hexi District, Tianjin, China

4. 포모사(Formosa Plastics Corporation)

: No. 201, Dunhua North Road, Songshan District, Taipei City, Chinese Taipei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